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5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9
1.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개요	9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1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

Ⅲ. 검토의견

1.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 개선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이라 함)에 따르도록 하고, ②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략)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국세채납처분의 예</u>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 ----- ----- <u>국세 강제징수의 예</u>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
<신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현행	개정안
	<u>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은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B/A)
2023	-	64,335	-	39,896	62.0
2022	896	87,658	601	61,572	70.2
2021	986	94,206	682	56,648	60.1
2020	1,232	89,775	902	60,919	67.9
2019	973	78,798	655	49,754	63.1
2018	1,071	91,591	733	59,090	64.5
2017	988	96,646	612	61,412	63.5
2016	925	89,780	590	50,610	56.4
2015	941	95,909	653	59,840	62.4
2014	992	83,881	690	53,467	63.7

※ 출처: 환경부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함)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

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 법 제4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되었는데²⁾,

현행법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대금지급 정지나 관허사업 제한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의 징수율 제고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도명	내 용	기대 효과
과세정보 요구·이용 (제5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지방세 기본법」상 과세정보 이용가능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른 경우 과세자료 확보 불가, 부과금법 준용 시 활용 가능
대금지급 정지 (제7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 상당하는 금액 지급 정지 가능	▶대금 지급과 동시에 압류하는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체납액 납부 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관허사업 제한 (제7조의2)	▶3회 이상 체납 후 1년 경과된 체납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 가능	▶관허사업 정지·취소 대상자에게 예고통지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가능
체납자 명단공개 (제7조의3)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는 명단공개 가능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소명기회 부여기간 중 납부독려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가능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³⁾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2) 제정 당시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2020. 3. 24. 시행)

3)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강제징수로 변경[「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7758호, 시행 2021. 1. 1.)]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 및 징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환경부 소관 12개 법률에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할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환경 분야 법률 현황]**

연번	법률 현황
1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1조(배출부과금), 제49조의6(강제징수)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7조(과징금 처분)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51조(과징금 처분)
5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과징금)
6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7	하수도법 제30조(과징금), 제73조(강제징수 등)
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8조의5(과징금)
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출처: 환경부

다만,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간 해석상 이견 발생, 개인·기업의 비밀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나열(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 등)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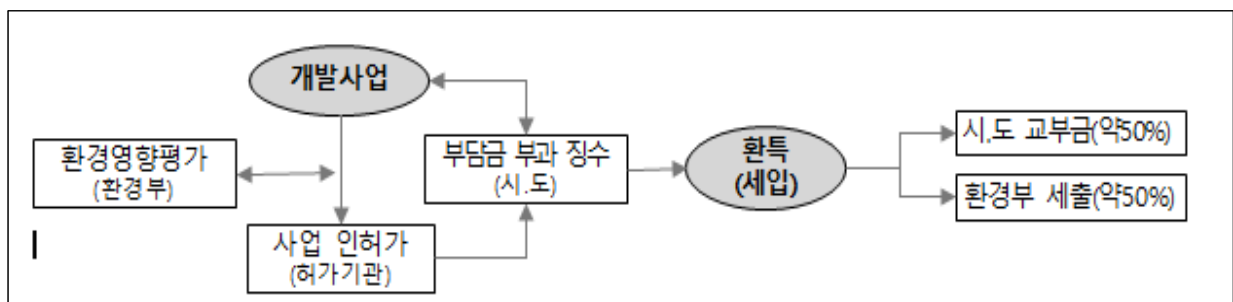
□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요

- (목적)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보전·복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대상)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3만㎡ 이상) 대상사업 등
- (금액산정) 부과단가(300원/㎡) × 훼손면적 × 지역계수

$$\text{단위면적당 부과금액 (300원/㎡)} \times \frac{\{ (\text{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times \text{용도 지역별 지역계수}^1) + (\text{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면적(㎡)} \times \text{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지역계수}^2) \}}{2}$$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주거·상업·계획관리(1), 녹지(2), 생산관리(2.5), 농림(3), 보전관리(3.5), 자연보전(4)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3등급 권역(2), 2등급 권역(3), 1등급 권역(4), 별도관리지역(5)
- (부과) 부과 대상사업 인·허가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 * 인허가 행정기관장은 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권자(시·도지사)에 통보, 인허가 통보받은 부과권자는 1개월 이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금 교부) 환경부장관은 부과권자(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금액 중 일부(약 50%) 교부, 교부금의 사용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으로 제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부 흐름도>



□ 부과·징수 현황

○ '23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금액은 399억원, 징수율은 62.0%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율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B/A)
2023	-	64,335	-	39,896	62.0
2022	896	87,658	601	61,572	70.2
2021	986	94,206	682	56,648	60.1
2020	1,232	89,775	902	60,919	67.9
2019	973	78,798	655	49,754	63.1
2018	1,071	91,591	733	59,090	64.5
2017	988	96,646	612	61,412	63.5
2016	925	89,780	590	50,610	56.4
2015	941	95,909	653	59,840	62.4
2014	992	83,881	690	53,467	63.7
2013	936	85,769	646	49,865	58.3
2012	588	91,848	539	53,913	58.7
2011	974	98,609	698	61,509	62.4